

## -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3차 모집공고

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2일

경기도지사

### I 모집 개요

- 신청기간 : 2021. 11. 1.(월) 09:00 ~ 11. 15.(월) 18:00
- 모집인원 : 6,000명 내외(3차)
-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<https://youth.jobaba.net>) 온라인 신청
- 지원대상

- 만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\* 경기도 거주자

\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
- 도내 중소(중견)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\*(주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자

\* 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
◆ 공공기관 범위 : 정부 공공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

#### ※ 관련 규정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공기관)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대상 등)

- 건강보험료 3개월('21년 8월 ~ 10월) 평균 92,610원(월 과세급여 270만원) 이하

- 지원내용 :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(연 120만원)
- 지급방법 : 지정된 복지물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(4회 분할지급)
- 지원기간 : 1년 (2021년 12월 ~ 2022년 11월)

## II

## 신청 자격

○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[접수기준일(2021.11.1.)기준]

① 연 령 : 접수기준일(2021. 11. 1.)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\* 청년

\* **1986. 11. 2. ~ 2003. 11. 1. 출생자**

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
② 거 주 지 : 접수기준일(2021. 11. 1.)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
③ 근무조건

-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\*에 주36시간 이상\*\* 근무하고 3개월(93일)\*\*\*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

\* 비영리법인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
\*\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)

\*\*\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'**21.8.1.이전**(8.1일 포함)인 경우 해당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**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('21년 8월, 9월, 10월) 평균 92,610원(월 과세급여 270만원)\* 이하인 자**

\*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('21년 8월, 9월, 10월) 평균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

### ◎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

-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
※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, 국가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등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
- 접수기준일('21.11.1.)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~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\*

\* 단,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
① 청년 노동자 통장(舊 일하는 청년 통장)

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舊 마이스터 통장))

-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
-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군 복무 중인 자, 사회복지무원, 전문연구원, 산업기능요원

※ 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

### III

## 신청 방법

### <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-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-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신청 매뉴얼 참조(홈페이지-자료실)

### ○ 신청기간 : 2021. 11. 1.(월) 09:00 ~ 11. 15.(월) 18:00

※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, 마지막 날인 11.15.(월)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.

### ○ 신청방법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
(참여접수 - 복지포인트)

※ 온라인 접수 문의 : ☎1577-0014 (평일 09시 ~ 18시)

### 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
※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, 근무확인서,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(2021.11.1.)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
(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, 주소변동,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,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)

### [4대 사회보험 가입자]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[사업주 직인 발급]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
(별도서식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④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
- ⑤ [사업주 발급]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3개월\*)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\* 3개월 : '21년 8월, 9월, 10월
-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
#### 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】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**주민등록초본**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 병역사항 전체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⑤ 고용임금확인서(별도서식 -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⑥ 근로계약서 사본
- ⑦ 급여통장사본(2021년 8월, 9월,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)

## IV 선정 기준

### ○ (필수요건)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

-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)
-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  - 거주지 충족 여부, 3개월 이상 재직 여부, 중소·중견·소상공인·비영리법인 근무 여부, 건강보험료(급여)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

### ○ (선정기준) 3개월(2021년 8월, 9월, 10월) **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**

- 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

### ○ (동점자 처리)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→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

## V 최종 대상자 선정

### ○ 최종 대상자 발표 : 2021. 11. 30.(화) 예정
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<https://youth.jobaba.net>)에 게재
- 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VI

## 유의사항

-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**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**되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(임시저장 등)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,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신청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,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.
-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자 선정 후,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(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)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.
-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: ☎ 1577-0014 (평일 09시 ~ 18시)
 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://youth.jobaba.net>) FAQ 참조